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39 호

「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

고 흥 군 의 회



##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고흥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의 위임에 따라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낚시제한기준 등(안 제3조)

다.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(안 제4조)

라.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(안 제5조)

마. 낚시통제구역의 표시(안 제6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4. 10. 1. ~ 2024. 10. 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 
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위임된 낚시제한기준 및 통제구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낚시제한기준”이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·마릿수·채장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방법·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.
2. “낚시통제구역”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·고시한 구역을 말한다.
3.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낚시제한기준 등) 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.

② 제1항 이외의 낚시제한기준은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·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고흥군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, 주

민생활의 불편해소,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,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수면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,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·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낚시통제구역의 명칭

2.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

3. 낚시통제구역의 지정·변경·해제 사유

4.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(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
5. 낚시통제구역의 지정·변경·해제 연월일

6.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

**제5조(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)** ① 군수는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에는 제4조의 절차를 따른다.

**제6조(낚시통제구역의 표시)**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낚시통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**별표****남시로 잡을 수 없는 수상동물의 종류**

수상동물	학 명	포획·채취 금지 체중
참문어	Octopus vulgaris Cuvier	300그램 미만
주꾸미	Amphioctopusfangsiao	55그램 미만

##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

제5조(낚시제한기준의 설정) 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(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
제6조(낚시통제구역) ④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·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,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, 지정·지정해제·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하며,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 2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성 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